

투자권유준칙
(Standards on Recommendation of Investments)

2024년 2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A Prudential plc company 

제정 및 개정 연혁

No.	Version	제정/개정 내용	일자
1	1.0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3년 3월
2	2.0	금융투자협회 표준안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2024년 2월

부칙 (2024. 2. 29)

이 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 차

I. 총칙.....	5
1. 목적	5
2. 용어의 정의	5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5
II. 투자자 구분 등.....	7
4.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7
III.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7
III-1. 투자자정보.....	7
5.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7
6.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8
III-2. 투자권유	8
7.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8
III-3. 설명의무	9
8. 설명 의무	9
9.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9
I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1
10.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1
V.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1
11-①. 계약서류의 교부	11
11-②. 청약의 철회	12

11-③. 위법계약의 해지	12
12. 손실보전 등의 금지	13
13.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4
14.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14
15.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15
16.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5

I. 총 칙

1. 목 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 등(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관리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말한다.
-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4) "적정성"이란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5)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법 제17조)"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함을 의미한다.
- 6)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III. 투자권유 희망 일반투자자에 대한 판매

III-1. 투자자정보

5.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확인한 일반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 (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일반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 5)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일반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6.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Ⅲ-2. 투자권유

7.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사모펀드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마.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바.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사.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아.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차.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카.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 (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Ⅲ-3. 설명의무

8. 설명의무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이하 "투자 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9.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8.1 설명의무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 유하는 경우에는 8.1 설명의무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 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용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 (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I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0.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록]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 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V.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1-①. 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11-②. 청약의 철회

-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0-② 및 10-③에서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1)-①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10-②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1)-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1)-④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2)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3)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11-③. 위법 계약의 해지

-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 (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 (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 (설명의무) 제1항·제3항,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2.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1)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투자일임계약에 한한다)
-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

- 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 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1)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영업소명

14.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15.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일반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

(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16.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1)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 (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 (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 목차

[부록] 투자성상품 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	17
[별지 제1호]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 확인서	22
[별지 제2호] 적합성 보고서	27
[별지 제3호] 적정성 판단보고서	29
[별지 제4호] 청약철회 요청서	30
[별지 제5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32
[별지 제6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34
[별표]	35

[부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I. 위험등급 체계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I.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공모펀드

가. 설정 3년 미만 펀드

- ① <표1>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 1>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 (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 (BBB-등급 이상), CP (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A-등급 이상), CP (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음.
 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개발위원회에서 정함.
 6.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 또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③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 ④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 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 수준 등 환매 용이성을 제한하는 사항)은 설명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 (등급 상향)할 수

있다.

나. 설정 3년 경과 펀드

- ①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2>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2>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구 분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 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함

- ②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ETF* 포함)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③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④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예)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⑤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

중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 ⑦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 수준 등 환매 용이성을 제한하는 사항)은 설명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 (등급 상향)할 수 있다.

(2)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 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III. 위험등급 산정 시기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 (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 (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IV.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V. 보 칙

이 기준은 '24.3.1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4.3.1일 이후 Ⅲ. 위험등급 산정 시기'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분류	질문	비고
*재산상황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50% 이하 <input type="checkbox"/> 50% 초과	적립식 투자시 고려할 항목
	여유자금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3개월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3개월분~6개월분 <input type="checkbox"/> 6개월분~12개월분 <input type="checkbox"/> 12개월분~24개월분 <input type="checkbox"/> 24개월분 초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가계지출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확인
	* 월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3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000만원 초과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	향후 투자예정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또는 수입원

	<p>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p>	
	<p>총 자산규모(순자산)</p> <p><input type="checkbox"/> 1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p> <p><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초과</p>	
	<p>총 금융자산대비 총 투자상품의 비중</p> <p><input type="checkbox"/> 5%이하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30%이하</p> <p><input type="checkbox"/> 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초과</p>	<p>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항목</p>
	<p>*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p> <p><input type="checkbox"/> 5%이하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30%이하</p> <p><input type="checkbox"/> 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초과</p>	
<p>*투자경험</p>	<p>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ELW <input type="checkbox"/>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p> <p><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 <input type="checkbox"/> 채권</p> <p><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펀드</p> <p><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 <input type="checkbox"/> 신탁</p> <p><input type="checkbox"/> 기타 []</p>	<p>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부분 설명의무 간소화 가능</p>

*투자목적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0.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회사참고사항 2-1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정의 참조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노후자금, 주택마련, 자녀교육, 사업자금, 여유자금 등 투자자금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5% 범위 <input type="checkbox"/>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15% 범위 <input type="checkbox"/> ±30% 범위 <input type="checkbox"/> ±50% 범위 초과	수익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손실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답하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항목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파악

<p>*금융지식 수준/이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p>*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투자위험 감수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p>기대이익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5%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5%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 범위 <p>손실감내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5%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15%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30% 범위 	
	<p>계약기간이 반 이상 남은 시점에서 단기적으로(1~2개월 동안) 예상 손실한도를 넘어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포트폴리오 모두 환매 <input type="checkbox"/> 포트폴리오 일부 환매 <input type="checkbox"/> 관망 <input type="checkbox"/> 신규 투자자금 추가 불입 	
<p>*투자 예정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p>현재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예정기간</p>

[별지 제2호]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p>▣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p>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실제 문항별 고객답변결과 기재	
<p>▣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p>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
투자권유 상품	(예) ○○증권 제×××회 파생결합증권
<p>▣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p>	
투자권유 사유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핵심 유의사항	※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p>▣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등 필요사항 기재)	

[별지 제3호]

적정성 판단 보고서

① 4 개 항목 충족/미충족시 또는 ② 총점 (6) 점 이상/ 총점 (5) 점 이하
 적정/부적정 해당여부는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름 (아래 표 참조)

고객 정보	적정성 판단 결과		미충족 사유
고객 연령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1) 점	
투자 기간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1) 점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2) 점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2) 점	
보유자산 등 : (연간 소득 및 부채 포함)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1) 점	
위험에 대한 태도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2) 점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1) 점	
총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총점(10)점	

[별지 제4호]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p>▣ 청약 철회 대상</p> <p>○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p>	
청약철회 대상 상품 :	<input type="checkbox"/> 투자성 상품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_____년 ____월 ____일
2) 계약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_____년 ____월 ____일
<p>▣ 주의 사항</p> <p>○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p>	

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신 청 인 : _____ (서명/인)

[별지 제5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참고자료	
▣ 안내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 _____ (서명/인)

[별지 제6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p>○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p>	
<p>_____년 _____월 _____일</p>	

[별표]

▶ 일반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투자자유형 분류를 참조하여 투자자성향 유형을 정한다.

고위험  저위험	1단계	공격투자형	위험선호형
	2단계	적극투자형	적극형
	3단계	위험수익중립형	성장형
	4단계	안정추구형	안정성장형
	5단계	안정형	위험회피형

▶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질문 중 투자예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고려하여 1년 이상 투자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 및 이와 유사한 위험등급 이상의 상품운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 유형 분류 (5단계) >

구 분		위험 감내도 (투자기간 등)				
		단기(1년 이하)	단중기	중기	중장기	장기
투 자 자 유 형	(고위험)	위험수익중립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저위험)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안정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